

연구자료 D183 / 2003. 12

농업인 민간위탁 교육·훈련의 실태와 발전방안

박 문 호 부연구위원

머 리 말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과 개방화 시대를 맞아 인적 자원의 개발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우리 농업도 핵심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기술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요청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요청에 의해 농업인 교육·훈련을 확충하는 한편, 그동안 정부기관 주도의 공교육과 함께, 최근에는 민간의 활력을 이용한 다양한 민간위탁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 민간위탁을 도입하는 주요 배경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경영능력, 기술, 창의력, 기업가 정신 등 민간 고유의 활력을 공공 부문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수단인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미, 선진제국에서는 농업인 직업교육을 공교육에서 민간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정착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은 아직 실시 초기 단계로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전문성이 미흡한 등 여러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 연구는 농업인 민간위탁 교육·훈련의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실태분석과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정부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교육·훈련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농업인, 교육기관 관계자, 농림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농업인 교육의 발전과 민간위탁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200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이 정 환

요 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사회 전반이 산업사회에서 지식 및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지식과 정보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개발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분야의 핵심인력을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농업인력의 육성이 요구되며 농업인의 기술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요청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공급자 및 수요자의 의향 및 실태분석과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정부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교육·훈련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첫째, 민간위탁교육의 개념과 의의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민간위탁의 개념과 의의, 효과와 한계를 검토하였다.

둘째, 농업인력육성정책 및 교육사업 추진현황에서는 농림부의 농업인력육성정책 및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

셋째, 농업인 위탁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에서는 2001~2002년에 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진한 “농업인 교육·훈련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된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의 실태 조사 자료와 교육기관 및 교육생 의견조사를 토대로 농업인 교육·훈련의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넷째, EU의 농업인 교육·훈련사례에서는 EU제국의 농업인교육 시스템 및 추진 현황자료 분석을 토대로 민간위탁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EU 제국의 교육추진체계 및 교육사업 운영실태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의 발전방향과 개선방안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업인 교육·훈련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교육·훈련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3. 연구결과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지식농업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 정보전달의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수요자의 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도 증대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직접교육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다양한 농업인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회 및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민간교육기능이 활성화하여 직업교육의 중심을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환경 등 농촌유지와 관련한 교양교육으로서 농업교육의 역할이 증대되고, 직업교육에서 제외되는 노령층등에 대한 사회교육기능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공공교육의 역할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기관으로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교육기관을 중점 육성하고, 기타 교육기관은 교육장 차원에서 활용하는 등 교육기관의 정비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교육기반 및 조직을 확보하고, 사업실적이 양호한 교육기관을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전문교육기관 육성을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기관 차원에서 제도 및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교육훈련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법”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증교육기관”을 양성토록 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의 발전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 전반에 걸친 농업 인력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분야별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원하는 교육훈련을 언제라도 제공할 수 있는 정보화체계의 구축과 함께, 개별농업인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2
3. 연구 내용 및 방법 2

제2장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의 개념과 의의

1. 민간위탁교육의 개념 4
2.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의 의의와 공공교육의 한계 6

제3장 농업인력 육성정책 및 교육사업 추진 현황

1. 농업인 인력육성정책의 경과 10
2. 농업인 교육훈련의 추진현황 12
3. 농업인 교육훈련의 문제점 16

제4장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1. 교육기관 유형별 교육조직 및 운영현황 19
2.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유형별 운영실태 27
3. 농업인 민간위탁교육·훈련사업의 문제점 30

제5장 EU 농업인 교육·훈련 사례와 시사점

1. EU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의 개관 32
2. EU 제국의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실태 33
3. EU 제국의 농업교육·훈련시스템의 시사점 40

제6장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의 발전 방향과 개선방안

1.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의 발전방향 42
2. 정부의 농업인 위탁교육사업 개선방안 43

부록 1. 직업교육훈련제도 관련 자료	47
부록 2. 농업인 교육·훈련 실태조사표	54
ABSTRACT	65
참고문헌	66

표 차 례

제3장

표 3- 1.	농업인력육성정책 제도의 변화	10
표 3- 2.	교육단계별 교육인원 및 예산	14
표 3- 3.	농업인 민간위탁교육기관의 유형별 현황	15

제4장

표 4- 1.	교육조직 및 교육기반시설	20
표 4- 2.	교과 과정 운영현황	21
표 4- 3.	교육예산 수입·지출현황	22
표 4- 4.	교육훈련 실적	23
표 4- 5.	수업관리 실태	23
표 4- 6.	교육평가 실태	24
표 4- 7.	사후관리 실태	24
표 4- 8.	교육기관의 교육개선에 대한 의견	25
표 4- 9.	전문교육기관의 의견	25
표 4-10.	일반단체의 의견	26
표 4-11.	환경단체의 의견	27
표 4-12.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황	28
표 4-13.	교육·훈련비 내역	28
표 4-14.	프로그램 유형별 교육 수요자 평가	29
표 4-15.	프로그램 유형별 주요 의견내용	29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3
----------------------	---

제2장

그림 2-1. 지식기반 농업인력의 육성체계	6
-------------------------------	---

제3장

그림 3-1.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정책의 체계	13
---------------------------------	----

그림 3-2. 농업인력 육성기관의 분류	15
-----------------------------	----

제5장

그림 5-1. 덴마크 교육·훈련사업의 조직체계	34
---------------------------------	----

그림 5-2. DLV의 조직체계	38
-------------------------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 전반이 산업사회에서 지식 및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지식과 정보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개발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농업 분야의 경우 농업·농촌인구의 고령화·부녀화와 함께 우수한 신규인력의 진입이 급감하는 등 농업인력의 질적·양적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농업 분야의 핵심인력을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농업인력의 육성이 요구되며 농업인의 기술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요청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요청에 의해 농업인 교육·훈련을 확충하는 한편, 그동안 정부기관 주도의 공교육과 함께, 최근에는 농업인 단체에 의한 민간 위탁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은 아직 실시 초기 단계로 추진 체계 및 역할과 기능 면에서 교육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인 민간위탁 교육·훈련의 수요자 및 공급자를 중심으로 한 실태분석과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정부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교육·훈련사업”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5개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주요 연구 내용은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의 개념과 의의, 농업인력육성정책 및 교육사업 추진 현황, 농업인 위탁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EU의 농업인 교육·훈련사례와 시사점, 농업인교육·훈련의 발전 방향과 개선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민간위탁교육의 개념과 의의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민간위탁의 개념, 효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왜,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를 민간위탁교육의 의의와 공교육의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였다.

둘째, 농업인력육성정책 및 교육사업 추진현황에서는 농림부의 농업인력육성정책 및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관련 자료의 검토를 토대로 농업인력육성정책을 개관하고,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이 당면한 과제를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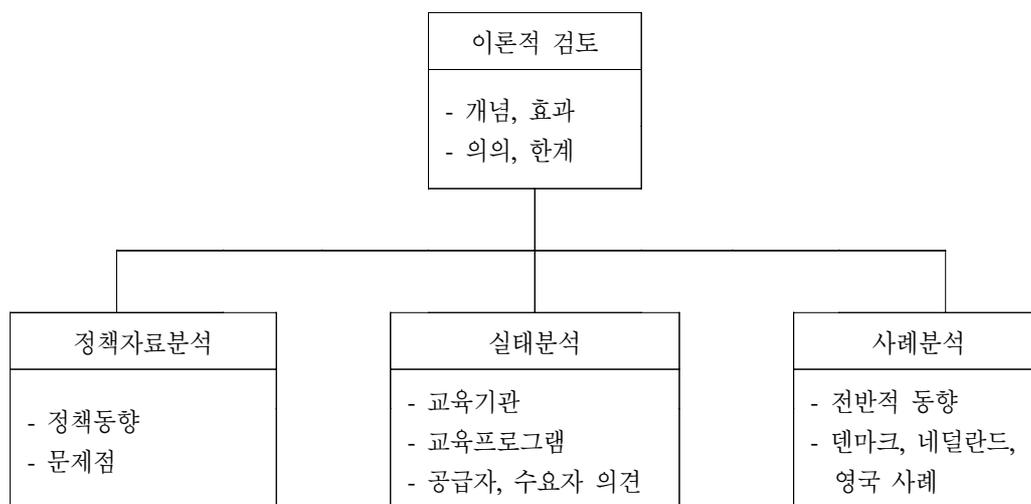
셋째, 농업인 위탁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에서는 2001~2002년에 걸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진한 “농업인 교육·훈련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된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의 실태 조사 자료와 교육기관 및 교육생 의견 조사를 토대로 농업인 교

육·훈련의 실태분석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넷째, EU의 농업인 교육·훈련사례에서는 EU제국의 농업인교육 시스템 및 추진 현황자료 분석을 토대로 민간위탁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EU 제국의 교육추진체계 및 교육사업 운영 실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끝으로,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의 발전 방향과 개선 방안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업인 교육·훈련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교육·훈련사업”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제 2 장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의 개념과 의의

1. 민간위탁교육의 개념과 효과

1.1. 민간위탁의 개념

민간위탁의 개념은 “행정사무를 민간에게 완전히 이양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그에 관한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자기명의와 책임하에서 해당 행정사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협조하는 제도”¹라고 정의될 수 있다. 즉 민간위탁은 각급의 정부가 최종적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을 유보하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공급 기능을 민간 부문에 맡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체의 변동이라는 점에서는 민영화와 동일하지만 서비스를 구입하는 쪽이 소비자가 아니라 정부 및 농업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교육메커니즘을 잘 설계 함으로써 정책목적의 달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은 정부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공급 하는가에 대한 결정권을

¹ 김정민,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활력의 활성화 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01.

가지고 있으면서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민간위탁을 도입하는 주요 배경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경영능력, 기술, 창의력, 기업가 정신 등 민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활력을 공공 부문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1.2. 민간위탁교육의 효과와 한계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 ① 경쟁 조건이 도입되어 교육기회 및 서비스의 제공에 효율을 높이며 비용 절감을 기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제도에 의한 제약이나 낮은 보수수준으로 말미암아 임용할 수 없는 인재를 활용할 수 있고, 민간에 축적된 지식을 습득한 인재를 계약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③ 기능의 아웃소싱을 통하여 정부의 규모를 공무원 수 또는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게 하고 행정 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④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민간 부문을 동원하고 공공부문과의 협조체제를 통하여 사회적 일을 분담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을 통한 민간위탁방식에 의한 교육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 ① 다수의 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기획과 조정을 해야 하는 새로운 업무가 부과되고 또한 민간참여로 인해 서비스 집행구조가 복잡해짐으로써 정치적·법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② 민간 교육기관의 이윤추구 성향과 계약체결을 위한 비용만회 등으로 인해 서비스 공급 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결과 영세농은 서비스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위탁 방법 및 한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효과적인 민간위탁교육이 가능하도록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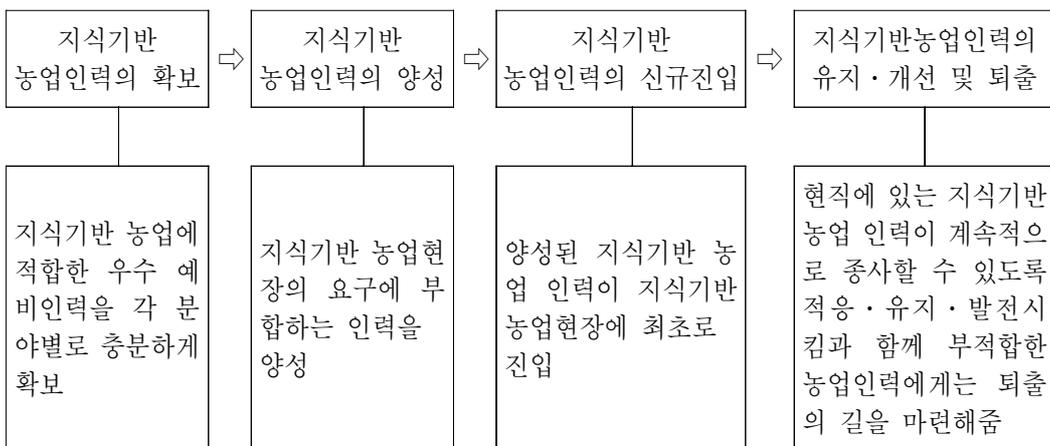
2.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의 의의와 공공교육의 한계

2.1.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의 의의

2.1.1. 지식기반농업 시대에 대응한 농업인 교육의 활력증대

지식기반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농업인 역시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재 활용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그림2-1>.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력 양성기관에서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식기반 농업인력 육성을 확보하고 이를 양성 신규시장에 진입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림 2-1. 지식기반 농업인력의 육성체계



자료: 정철영,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농업인력 양성”, 한국 농업교육학회지(4/34), 한국 농

업교육학회, 2002.

디지털 시대의 진전에 따라 농업에서도 기회요인과 위기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데 그 이유는 결국 핵심적인 생산요소가 되는 지식이 지니는 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지식은 그 밖의 생산요소의 희소성을 지니지 않고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며, 이들 지식이 많이 전달될수록 새로운 지식 창출을 더욱 더 배가시켜 수확체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식은 또한 공공재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하다. 지식기반경제의 특징인 거래비용의 극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 각 단계에서 지식정보화를 주도할 인력양성의 중요하며, 공교육으로서는 이러한 빠른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고, 질 높은 교육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농업인 교육기관의 기능의 특성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기관 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내용의 일정 부분을 민간으로 이양하여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농업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2.1.2. 생산·판매양식의 변화와 정보화 수요 증대

현재의 생산양식은 다품종 소량생산, 적기생산을 통한 재고감축 등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소비패턴 역시 소비자를 1 대 1로 직 대면시키는 마케팅 형식을 취하고 있다. 농업에서도 이러한 생산·판매양식의 변화에 따른 정보화 및 맞춤형 교육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영농정보, 기술정보, 전자상거래정보, 생활정보 등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세기 말에 일어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농업 부문에도 영향을 미쳐 21세기는 기술 경영 정보가 주도하는 새로운 농업혁명의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농업혁명은 토지와 인력에 의존하던 농업을 기술과 자본이 집약되는 종합 산업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며 품목에 따라서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자연조건보다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농업종사자의 경영능력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농업인도 과거와 같은 단순생산자의 위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진 경영기법과 시장 장악력을 가진 전문 경영인으로 성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는 농업인 개인이 평생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정보화의 확산은 기존 교육·훈련제도를 개혁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인 위탁교육이 교육기관의 특성별로 전문화될 경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정예인력 육성사업의 각 주체에 대한 인력개발의 체계화·연계화가 보다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효율적인 인력개발 체계의 구축을 위한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2. 농업인에 대한 공공교육의 한계

2.2.1. 농업교육행정의 문제점

농업교육행정은 기본적으로 시의 적절한 농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원들이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원활한 교육지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만, 현재의 농업교육 행정은 급속한 농업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수행되던 이론 위주의 교육이 답습되고, 현장교육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양적으로만 확대하는 등 실적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또, 교육 담당자의 불필요한 잡무 증가로 인해 교육에 대한 열의 부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획일적 교육과정의 답습과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의 탄력성 부

족은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보다 효율적이며 특성화된 교육을 수행하려는 목표와 모순을 낳고 있다.

2.3.2.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여건

공공기관의 교육은 다양한 농업인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교육 여건이 빈약하고 비탄력적이라는 점이다. 우리 농업이 전통농업에서 지식기반농업이 급속히 전환되면서, 다양한 교육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의 농업인 교육은 이러한 수요에 신속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현장을 보면, 교육 수요가 많은 쪽은 시설 및 교육기자재가 부족하고 교육 수요가 적은 부분은 교육시설의 활용률이 낮은 등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점차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현장 견학이나 체험학습 등에 대한 교육시설 부족은 공공교육으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별로 특성화된 민간교육에서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제 3 장

농업인력 육성정책 및 교육사업 추진현황

1. 농업인력 인력육성정책의 경과

1.1.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배경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하던 1970년대 이후 이농 인구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농업 종사자 감소와 고령화현상의 심화로 영농승계 인력이 급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농촌인력의 질적 양적 저하는 기존 농업인력의 전문경영능력 제고와 함께 새로운 농업인력 육성의 필요성으로 연결되어 1981년 농업인후계자 제도를 시작으로 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다<표 3-1>.

표 3-1. 농업인력 육성정책 제도의 변화

구 분	인력육성정책	비 고
1981	○ 농업인후계자제도	UR협상(1986)
1990	○ 농업법인경영체육성	WTO출범(1994)
1991	○ 전업농육성정책	
1994	○ 산업기능요원제도	
1994	○ 자영농고, 특성화대학 지원	
1997	○ 농업전문학교 설립	
2002	○ 취농창업후계농업인제도	DDA(2002)

특히, 1990년대의 UR, 2002년의 WTO/DDA 농업협상 등 농업개방에 따른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인력 육성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면서 농업법인경영체 및 전업농육성 농업전문학교 설립등 농업인력 육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증가하게 되었다.

1.2.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경과

1980년대 농업인력 육성정책은 특별한 개념이나 기능의 정립이 되지 않고 단순히 “농업인후계자육성정책”이 주요한 인력육성정책이었다. 1980년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이 제정되어 1978년부터 새마을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원하던 영농후계자 육성자금을 통합 운영하게 되었는데, 국가의 정책자금 지원에 의한 최초의 농업인력 정책이라 볼 수 있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농업인력 육성정책이 기존의 후계농업인 외에 전업농 및 영농조직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인력육성 정책의 범위가 전업농, 영농법인 등으로 정책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농업인력 육성정책에서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대되었다. 특히, UR 협상의 대응조치로 탄생한 1990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이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통합되면서 재원이 크게 확충되었다.

농업인 교육·훈련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1993년에 수립된 “신농정 5개년계획”에서 구체화되었는데, 최초의 농정차원에서의 교육·훈련대책이라 할 수 있다. 농과계 고등학교를 후계인력 육성의 중심학교로 육성하는 한편, 국립농과대학을 기능별 특성화대학으로 육성하고, 농과대학에 농업전문경영자과정을 설치하는 등 전문적인 농업인 재교육시스템 구축되게 되었다.

그리고 1994년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통해 기존의 농업인후계자제도를 체계화하여 예비후계자제도를 도입하고, 우수후계자에서 전업농으로, 전업농에서 선도농

가로 발전하도록 하는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수립하였다.

전업농 육성사업은 1992년 후계자육성사업의 보완대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94년에 농업의 핵심인력으로서의 육성계획 수립하고, 이를 통해 1995년에 영농규모 화사업 및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인후계자를 후계농업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에 시행되던 예비후계자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원예, 특작, 축산 전업농은 농업경영종합자금으로 통합하고 개별 경영체는 후계자, 전업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토록 하였다. 또한 법인 경영체는 농기업의 중심체로 육성하여 규모화를 꾀하게 되고 농업계학교는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합리적인 후계인력의 육성을 도모하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농업인력정책은 후계농업인제도는 신규후계농업인뿐 아니라 취농창업후계농업인 까지도 포괄하게 되며, 여기에 신지식농업인 육성을 통해 선도농을 적극 육성하기에 이르렀다.

2. 농업인 교육훈련의 추진현황

2.1. 농업인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1C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농업에도 지식과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농업과는 차별화된 고부가가치의 지식농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농업 선도를 담당하기 위한 신지식 농업인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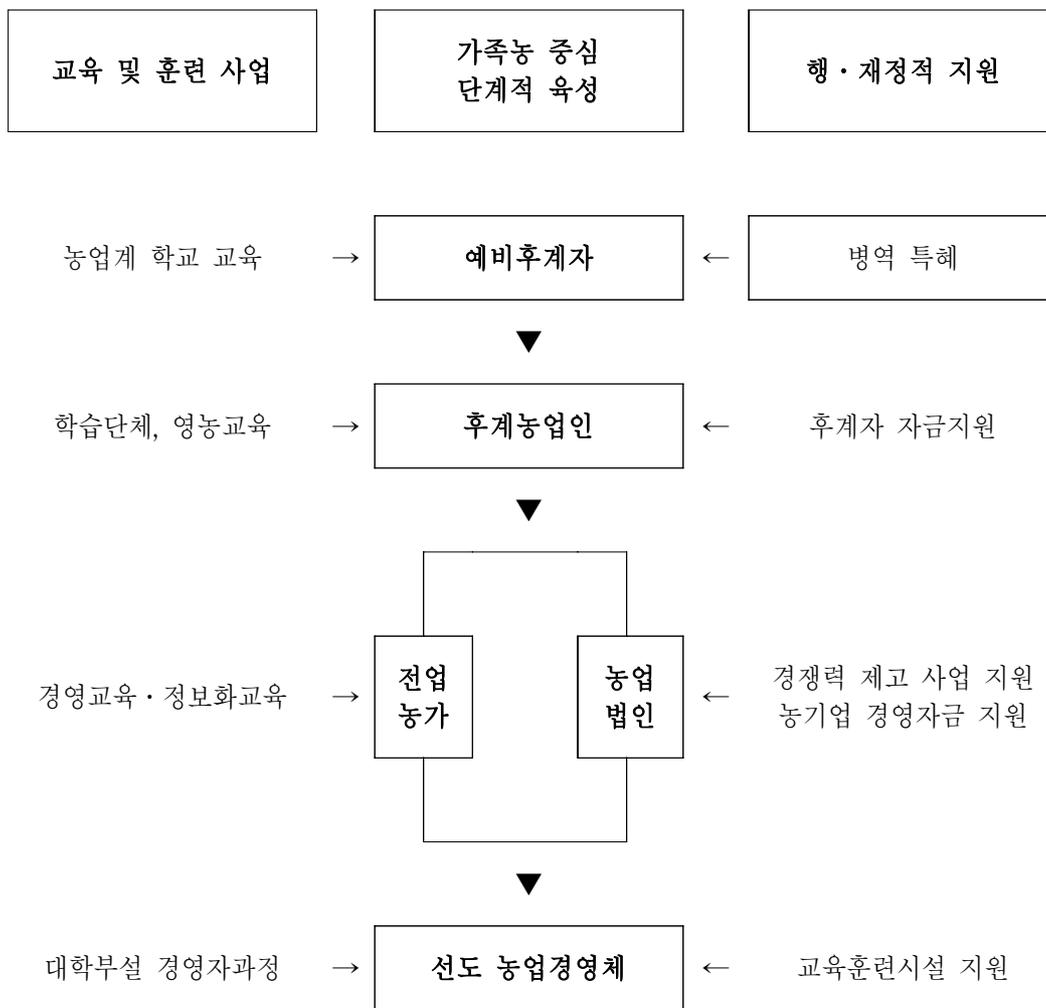
재정 지원을 통해 양성된 예비농업인력들이 학교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농업현장에 적용시키고 향후 농업 및 농촌을 주도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성장을 지원하는데 정책적 목표를 두고 있다.

정책의 추진 체계는 교육훈련과 자금 지원을 연계한 단계적 육성체계로서, 후계농업인에서 선도농업경영체로의 유도, 성장단계를 거치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제시

14

하고 있다<그림 3-1>.

그림 3-1.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정책의 체계



2.2. 농업인 교육훈련 추진현황

농업인 교육실적과 예산을 보면,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교육과정은 총 49개 교육 과정에 교육인원은 76,384명, 소요예산은 2,730백만 원이었다. 이중 농기계기술교육, 농업인 해외연수 등이 포함된 정착 및 성숙단계의 교육예산의 비중이

72.3%를 차지하고 있다<표 3-2>.

표 3-2. 교육단계별 교육인원 및 예산

단위 : 명, 백만원, %

교육단계	교육과정	교육인원	예 산
계	49개	76,384 (100.0)	2,730 (100.0)
예비농업인 등 저변확대 교육	어린이농업교실, 초등교사농업 연수반 등 11개과정	5,554 (7.3)	241 (8.8)
신규 진입단계 교육	신규후계농업인교육, 신규쌀전업농교육, 귀농희망자교육 등 7개과정	12,122 (15.9)	516 (18.9)
정착 및 성숙단계 교육	농기계기술교육, 농업인해외연수 등 31개과정	58,708 (76.8)	1,973 (72.3)

교육의 주안점은 농업경영교육, 전문기술교육 등을 통해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어린이, 농고생 등 농업예비인력에 대한 농업·농촌 비전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을 이끌 농업저변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자영농고생들에게 신지식농업인농장 현장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기존 농업인력 육성은 학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교교육은 농학계 대학 및 전문대학의 부설 교육원, 사회교육은 주로 민간위탁교육기관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등 공공기관에서도 예비농업인력과 기존농업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그림 3-2>.

민간위탁 교육기관을 다시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크게 교육전문기관, 일반교육

단체 및 환경단체로 구분되며, 환경단체는 다시 생산자 교육단체와 소비자 교육단체로 재분류할 수 있다<표 3-3>.

그림 3-2. 농업인력 육성기관의 분류(교육대상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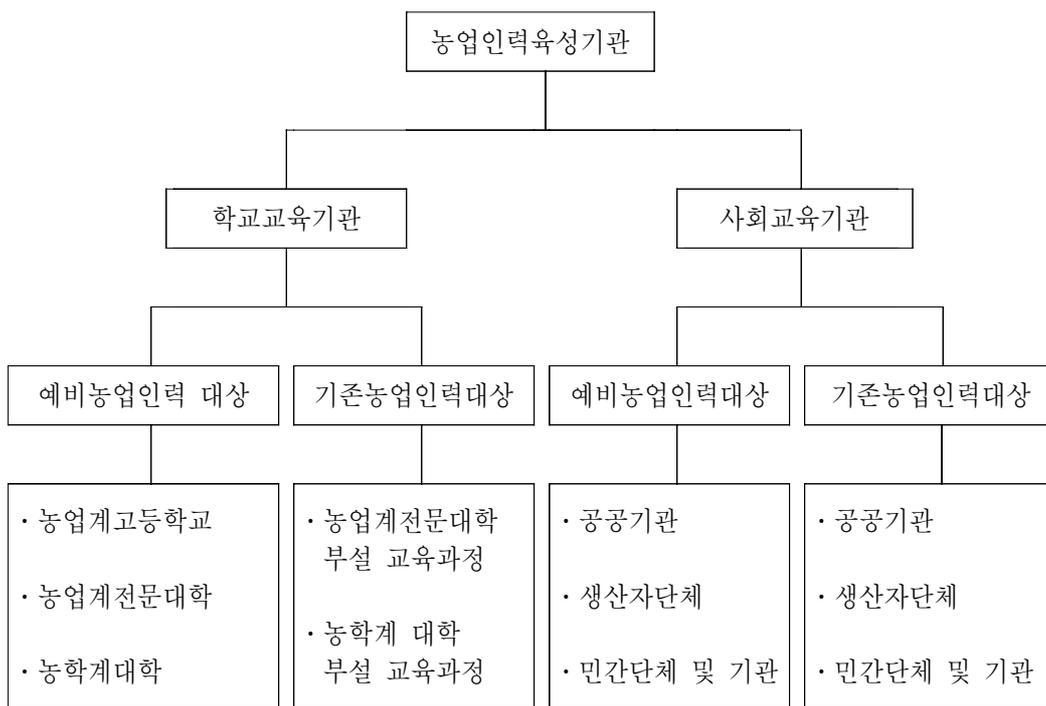


표 3-3. 농업인 민간위탁교육기관의 유형별 현황, 2001

		교육기관
교육전문기관		가나안농군학교, 농협대학
일반교육단체		농업기반공사, 한국4-H본부, 도드람양돈연수원, 한국 농업경영인 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더불어살기생명운동본부,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여성농업인회, 전국여성농업인회, 신지식농업인회, 농림수산정보센터, 농협, 농산물품질관리협회
환경 교육 단체	생산자 교육기관	자연농업협회, 유기농업협회, 정농회, 가톨릭농민회, 흙살림, 팔당생명살림연대, 한살림, 고삼농협,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두레친환경농업연구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보전자연농협회, 상주환경농업협회, 풀무생협, 원주생협
	소비자 교육기관	생협연대, 한국여성민우회, 야마기시증경향실현지, 주민생협, 생협전국연합회

2.3. 교육훈련 내용

교육훈련 내용을 보면, 기존교육의 개선 사항을 보완하여 지식농업 실현을 위한 지식·기술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교육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 지도자 과정 등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세부추진내역을 보면, 첫째, 지식기반사회의 우리 농업을 주도할 지식농업인 육성을 위해 「지식농업인력육성교육과정」 확대 및 신규 교육과정 개설하여 자영농고생 선진농장실습교육과 농업인신지식기술 현장체험교육 및 세미나과정 개설을 하였다.

둘째, 창업예비농 및 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농정시책 및 전문분야별 기술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셋째, 농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 및 성숙단계의 교육 강화 차원으로 정보화,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실시, 영농학생전진대회 수상자 해외연수과정등을 신설하였다.

넷째, 농외소득 증대·도농교류확대 및 농업·농촌 이해 증진을 위한 그린투어리

즘 사업의 지도자양성과정을 개설하였다.

3. 농업인 교육훈련의 문제점

3.1. 자금지원에 치중된 인력육성

선정된 농업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자금지원에 치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적인 기술·경영교육이 부족하고, 영농과정에서의 지속적 컨설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규후계농업인 공통교육 5일, 영농기술교육 1주일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은 1개월간의 현장실습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는 교육을 위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교육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2. 농업계 학교교육의 농업인력 육성과 연계 미흡

학교교육 체제와 사회교육 체제는 상호 간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나 현재 농과계 학교교육을 통한 신규 농업인력의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농림계 고졸 졸업자 및 농업계 졸업자의 농림어업 종사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계 고교 졸업자 중 농림어업종사자 비율은 1990년 4,291명(24.4%)에서 2000년 752명(7.6%)으로 1996~2000년간 농업계학교(전문대, 대학 포함)를 졸업한 74,491명 중 10.1%인 7,514명만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체계 미흡은 농업계 졸업생의 영농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 체계에 대한 근거마련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3.3. 농업인의 평생교육 체계 미비

대농민 교육기관의 농업경영인 육성 교육은 대부분 1회적인 육성훈련에 그치고 있어 농업경영자가 자신의 농업경영 수준의 발전 단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자기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의 인력감축으로 대농민 밀착 교육훈련기능도 약화되어 있고, 교육기관도 중앙, 지자체, 대학, 농업 관련 단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상호 차별화되지 못하고 일반 교양수준의 교육훈련이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 7만 명 내외의 집체교육을 하고 있으나 1인당 예산이 4만원 미만으로 일반적인 교양강좌 수준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전문기술 획득에 필요한 심화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공급자 위주의 소집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교육생의 교육참여 열의를 떨어뜨리고 있다.

3.4. 비정규교육을 통한 농업인력 육성기관의 부족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 교육 수요자의 대부분이 인구 밀집지역인 도시에 거주하여 비교적 교육 여건이 좋고 향후 직장과의 연계부분도 유리하나 농업의 경우 교육 수요자의 대부분이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에 분산 거주하고 있어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농림부 및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농업교육 기회도 많지 않은 편이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간 경쟁도 미비하여 교육기관의 전문성, 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 수준 등 교육 제반 여건이 미흡한 상황이다. 농업단체 등에 의한 민간위탁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교육기관간의 편차가 심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3.5. 농업인력 육성의 평가 문제

농업인력 육성 체제에 대한 평가가 학교교육 체제와 사회교육 체제 모두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전공분야로의 취업률이 만족스럽지 못

하고 학생들의 취업률에 대한 다차원적이며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졸업생들의 영농능력 등의 전공분야에서의 능력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가 없다.

또한, 사회교육 체제에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이후의 평가 및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들이 제공되지만 교육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 4 장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이 실태조사 자료는 농림부의 “농업인력육성 교육활성화 계획”에 의거 매년 농업 단체에 교육비를 지원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위탁교육사업의 실태를 분석한 것으로서, 2002년도의 민간위탁 교육기관 및 단체 32개소에 대한 평가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실태분석은 교육기관분석과 교육 프로그램 분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교육 기관 분석은 교육조직 특성에 따라 일반농업단체(기관)와 환경단체로 유형화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 분석은 교육의 특성에 따라 생산자 일반교육, 기술교육, 해외연수 및 견학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1. 교육기관 유형별 교육조직 및 운영현황

1.1. 교육훈련 기반

교과담당조직은 일반교육단체의 경우 교육 전문기관이 포함되어 있어 38.5% 정도의 독립기구화가 유지되고 있으나 환경교육단체의 경우 단체의 규모가 작고 여건상 대부분 부서 또는 담당자 중심으로 교육조직이 짜여 있어 담당자 1인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교원 확보의 경우 일반교육단체는 전임교원과 강사가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환경단체에서는 기관별 편차가 심한데, 전임의 비율

표 4-1. 교육조직 및 교육기반시설

단위: %, 개소

		일반교육단체 (13)	환경교육단체 (19)	전체교육기관 (32)
교과 담당조직	독립기구화	5(38.5)	4(21.1)	9(28.1)
	전담부서 담당	5(38.5)	13(70.7)	18(56.3)
	기 타	3(23.0)	2(10.5)	5(15.6)
	계	13(100.0)	19(100.0)	32(100.0)
전임교원 확보상황	전임위주	4(31.0)	8(42.1)	12(37.5)
	강사위주	5(38.0)	4(21.1)	9(28.1)
	강사전담	4(31.0)	7(36.8)	11(34.4)
	계	13(100.0)	19(100.0)	32(100.0)
교육시설 확보	강의실보유	10(76.9)	11(57.9)	21(65.6)
	숙소보유	8(61.5)	6(31.6)	14(43.8)
	자체실습장 보유	4(30.8)	6(31.6)	10(31.3)
	회원실습장 보유	7(53.8)	7(36.8)	14(43.8)

이 42.1%로서 담당자 1인 중심의 교육을 반영하는 결과로 추정된다. 완전히 강사가 전담하는 경우도 36.8%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교육기반 여건이 환경단체 비교적 열악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교육시설의 확보 유무에서는 일반교육단체에서의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시설별로는 강의실 및 숙소보유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실습장의 확보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반단체나 환경교육단체의 경우 당일교육, 현지 순외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현장교육에서 중요시되는 실습장의 경우는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과반수 가 실습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교과 과정 운영

교육 수요확보를 위한 홍보는 주로 행정기관 의뢰, 또는 농업단체의 회원에 대한 협조공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일반교육단체의 경우 기관·단체에 의존

하고 있는 비율이 84.6%로 매우 높은 편이다.

표 4-2. 교과 과정 운영현황

단위: 명, %

		일반교육단체 (13)	환경교육단체 (19)	전체교육기관 (32)
교육홍보 수단	기관단체	11(84.6)	11(57.9)	22(68.8)
	자체홍보지	5(38.5)	14(73.7)	19(59.4)
	인터넷홍보	7(53.8)	9(47.4)	16(50.0)
사전교육수요파악		4(30.8)	4(21.1)	8(25.0)
견학 및 실습비율		27.2	20.5	23.9
강사관리	DB화	3(15.8)	0(0.0)	3(9.4)
	주소록관리	6(46.2)	5(26.3)	11(34.4)
	수시섭외	9(69.2)	14(73.7)	23(71.9)

일반단체 및 환경단체는 모두 홍보지를 통한 홍보가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환경단체는 홍보지를 통한 교육홍보가 73.7%로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홍보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비교적 환경농업단체가 일반교육단체보다 상대적으로 교육홍보에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 계획의 수립 시 사전적인 교육 수요에 대한 파악은 일반교육단체에서는 수요생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파악을 미약하나마 하고 있는 편이나 환경단체의 경우는 대부분이 자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교육 수요 파악 및 창출측면에서의 노력이 미흡한 편이다.

교육방법면에서 보면, 기술교육에서 중요시되는 견학·실습의 실시비율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강의식 교육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사관리는 강사의 외부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시 수시섭외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문 강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교육 실적

표 4-3. 교육예산 수입·지출현황

단위: 천원, %

		일반 교육단체(13)	환경교육단체		전체 (32)
			생산자 교육기관(15)	소비자 교육기관(4)	
교육비 수입	보조금	51,996(76.9)	13,661(59.1)	14,444(35.7)	26,700(61.1)
	기관부담	7,884(11.7)	4,221(18.2)	13,347(33.0)	8,484(19.4)
	교육생부담	7,692(11.4)	5,250(22.7)	12,638(31.3)	8,527(19.5)
	계	67,572 (100.0)	23,131 (100.0)	40,429 (100.0)	43,711 (100.0)
교육비 지출	장사료	10,912(16.1)	5,734(24.8)	10,623(26.3)	9,089(20.8)
	교재비	6,554(9.7)	4,934(21.3)	2,448(6.1)	4,645(10.6)
	견학비	19,312(28.6)	1,023(4.4)	17,672(43.7)	12,669(29.0)
	실습비	1,663(2.5)	969(4.2)	1,833(4.5)	1,488(3.4)
	소계	27,529(40.8)	6,926(29.9)	21,993(54.3)	18,802(43.0)
	기타	29,130(43.1)	10,474(45.2)	7,853(19.4)	15,819(36.2)
	계	67,572 (100.0)	23,131 (100.0)	40,429 (100.0)	43,711 (100.0)

교육비의 수입·지출면을 보면, 먼저 교육비 총액은 교육기관 개소당 일반교육단체가 67,572천 원, 환경교육 생산자단체 23,131천 원, 환경교육 소비자 단체 40,429천 원의 순이며, 전체평균 교육비는 43,711천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의 조달측면인 수입 면에서는 일반교육단체의 경우 1개소를 제외하고는 교육비 일체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환경교육단체에서도 보조금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지출 면에서는 환경소비자 교육기관을 제외한 일반교육단체 및 환경생산자단체의 기타교육관리비가 기관 모두 45%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경비에서

는 강사료 지출이 가장 많으며, 교육의 내실을 반영하는 교재·실습·견학비에 대한 지출은 저조한 편으로서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표 4-4. 교육훈련 실적

단위: %

	일반 교육기관(13)	환경교육단체		전체 (32)	
		생산자 교육기관(15)	소비자 교육기관(4)		
교육훈련실적 (훈련인원/계획인원)	89.1	92.3	90.5	90.6	
교육훈련의 분산도	1/4분기	15.2	35.6	24.9	25.9
	2/4분기	23.4	15.9	42.3	22.9
	3/4분기	44.9	35.2	28.2	35.2
	4/4분기	16.5	13.4	4.6	16.0
	계	100.0	100.0	100.0	100.0

부실함을 보여 주고 있다. 교육기관 유형별로는 환경교육 소비자 단체에서 교재·실습·견학비 지출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훈련의 계획대비 실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90%이상의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부분 소속 회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 단체 중 교육인프라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갖춘 교육전문기관의 실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시기는 교육기관 전반적으로 볼 때 3/4 분기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교육관리

출결사항 체크, 수료증 발급등 수업관리는 일반교육단체의 경우는 비교적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경교육단체에서는 수업관리가 철저하지

표 4-5. 수업관리 실태

단위: %, 개소

	일반교육단체(13)	환경교육단체(19)	전체(32)
출결상황 체크	10(76.9)	8(42.1)	18(56.3)
수료증발급	11(84.6)	9(47.4)	20(62.5)

않은 기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교육이 일회성 단기교육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교육수료 후 설문지 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을 토대로 한 교육에 대한 사후 평가 등 교육평가 실태를 보면, 일반교육단체의 과반수 이상이 교육의 사후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환경교육단체의 사후 평가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육단체의 경우는 설문지조사는 비교적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나 교육의 사후 평가는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환경교육 소비자 단체는 설문지조사는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회원의 확산을 위해 수업에 대한 반응 등을 토대로 교육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생의 사후관리는 전반적으로 회원관리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생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다.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일반교육단체나 환경교육 소비자 단체에서는 비교적 컨설팅관리가 활발한 편이다. 심화교육은 일부 기관에서 기초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교육평가 실태

단위: %

	일반교육단체(13)	환경교육단체(19)	전체(32)
설문지조사	10(76.9)	9(47.4)	19(59.4)
평가검토회의시행	6(46.2)	12(63.2)	18(56.3)

표 4-7. 사후관리 실태

단위: 개소, %

	일반교육단체(13)	환경교육단체(19)	전체(32)
회원관리	11(84.6)	17(89.5)	28(87.5)
컨설팅 관리	8(61.5)	11(57.9)	19(59.4)
심화교육	2(15.4)	4(21.1)	6(18.8)

1.5. 교육기관 담당자의 교육개선에 대한 의견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사업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보면 우선 교육기관 전체적으로는 교육추진체계에 대한 의견이 41.0%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방법(26.2%), 교육내용(21.3%), 교육비 지원(11.5%)의 순이다.

의견내용별로 각 기관유형의 의견 분포를 보면, 교육추진체계에 대하여는 생산자 환경교육단체가 48.4%로 일반단체 33.3%에 비해 높고 교육방법에 대하여는 일반교육단체가 36.7%로 환경교육단체 16.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환경교육단체의 경우 교육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비에 대한 개선의견이 16.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4-8. 교육기관의 교육개선에 대한 의견

단위: 건(%)

구 분	교육추진체계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비	계
일반교육단체	10(33.3)	11(36.7)	7(23.3)	2(6.7)	30(100.0)
환경교육단체	15(48.4)	5(16.1)	6(19.4)	5(16.1)	31(100.0)
계	25(41.0)	16(26.2)	13(21.3)	7(11.5)	61(100.0)

표 4-9. 전문교육기관의 의견

기관명	의견내용
농업전문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이 희망하는 교육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과에 반영 ○국가기술험취득 교육과정 운영확대 ○농한기 교육실시를 위한 예산 조기배정 ○분야별 정부 소관 실무부서에서 사업과 관련한 교육 수요 개발 ○농업인이 원하는 교육내용, 시기, 교육기관을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필요
가나안농군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농업후계인력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의 농업·농촌을 접할 수 있는 교육기회 확충
농협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에 대한 숙박교육은 어려운 실정으로 당일교육 희망

표 4-10. 일반단체의 의견

기관명	의견내용
한국4-H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연수교육의 경우 연수 대상자 선발, 대상국, 시기, 방법, 사전 교육 등 교육추진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친환경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현장교육 및 실천사례 중심 교육 ○ 포괄적인 교육보다는 교육과정을 세분화 ○ 교육홍보의 체계화 ○ 농가의 여건에 맞는 현장지도 강화 ○ 시·군 교육청과의 협조 관계 조직화 ○ 수요개발을 위한 교육계획에 대한 홍보체계정비 및 전문교육 확대
도드람양돈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현지교육 시 시·군 관계자와 협조체계 확립
전국농업기술자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은퇴, 퇴직자에 대한 취농교육수요 증대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친 농업교육 필요성 증대 ○ 실습교육 강화 및 소요예산 지원
신지식농업인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업인에 대한 교육기회 확충 ○ 농업인교육은 품목별 심화학습 프로그램 개발
더불어살기 생명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시설의 확충 ○ 전문교육 강화
전국귀농운동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자 교육은 창업벤처수준의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합숙훈련에 대한 교육비지원의 현실화 ○ 영상교육시스템, 실습장등 교육방법의 다양화
한국여성농업인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정보 교류를 위한 각 기관 교육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교육프로그램개발
전국여성농업인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전문화를 위한 기술교육 ○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현지 마을 단위 교육확대

표 4-11. 환경단체(생산자)의 의견

기관명	의견내용
농협중앙회	없음
품질인증전국연합회	○ 교육수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자격고시화)
한국자연농업협회	○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지역농민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능력 있는 단체에 요구하는 형식으로 수요개발 ○ 품목별로 전문화된 기술교육
한국유기농협회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재교육 필요 ○ 교육의 전문화, 교육방법의 다양화
정농회	○ 다양한 현장 적용사례 발굴을 통한 실천기술 확보
카톨릭농민회	○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농업교육이 필요
흙살림	○ 선진농가를 활용한 전문 사례교육 강화
강화도환경농업농민	○ 메뉴(강사료, 원고료등)식 지원에서 사업별 정액지원방식으로 전환 ○ 교육용 비디오자료 제작 개발
두레친환경농업농민	○ 품목 또는 농법별 전문교육 강화 ○ 선도농가등 현장체험농장 개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교육비 지원 방식 개선 및 교육비 지원 단가 현실화 ○ 교육기자재 제작 구입지원

2.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유형별 운영실태

2.1. 교육훈련 실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황을 보면, 프로그램 당 교육·훈련 기간은 전문기술교육이 평균 6.8일, 생산자 일반교육이 1.9일, 소비자교육이 1.8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 인원의 계획 대 실적은 생산자교육과 소비자교육이 73.3%, 기술교육이 70.0%, 연수 및 견학이 66.7%로서 대체로 70%내외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에 따라서는 교육인원 확보가 어려워 당초 예정된 교육 프로

그램을 취소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황

	교육훈련기간	계획대 실적비 (훈련인원/계획인원)	교육훈련과목 (과목수)	실기·현장견학 비율
기술교육	6.8일	70.0%	6.5개	24.1%
생산자교육	1.9	73.3	6.1	5.3
연수견학	-	66.7	-	100.0

표 4-13. 교육·훈련비 내역

단위: 천원, %

	1인당 교육비 (천원)	국고부담비 (%)	기관부담비 (%)	자부담비 (%)
기술교육	184.0	62.7	16.7	20.6
생산자교육	55.0	71.3	18.4	9.7
연수견학	1,423.0	63.2	0.4	36.4

교육훈련의 과목 수는 기술교육이 평균 6.5개, 생산자 6.1개, 소비자 5.8개 과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교육의 경우는 오히려 과목의 다양성보다는 전문화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내용 중 실기 및 현장교육 비율은 소비자 교육이 37.1%, 기술교육이 24.1%, 생산자 교육이 5.3%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교육에서는 현장사례 중심의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인당 교육비는 연수견학 1,423천 원, 기술교육 184천 원, 소비자교육 55천 원, 생산자 교육 55천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육생의 자부담은 생산자교육과 소비자 교육은 형식적인 수준이거나 아예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수요자 평가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자 평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육의 만족도

는 견학·연수교육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비교적 교육 수요자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가 이루어지는 기술교육에서 교육 만족도가 가장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성과는 교육의 만족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반면 향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나타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표 4-14. 프로그램 유형별 교육 수요자 평가

단위: %

구분		기술교육	생산자교육	견학·연수	평균
수요자 평가	만족도	79.0	80.3	83.0	80.77
	교육성과	76.3	75.8	80.5	79.38
	향후교육필요성	91.7	97.5	100	84.02
	평균	82.3	84.5	87.8	84.19

표 4-15. 프로그램 유형별 주요 의견내용

구 분		의견내용
전문기술교육	품목교육	실용성이 있는 현장실습교육 필요 교육기간이 짧다
	환경기술교육	사례교육등 현장 경험자의 강의필요 작목별 세분화된 교육필요 교육기간이 짧다 교육기회를 늘려야 한다
생산자교육	친환경교육	현장 중심의 전문기술교육 필요 유통·판매에 대한 교육 및 지원 필요 프로그램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여성농업인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현장체험학습 보완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귀농교육	구체적인 전문교육 필요 교육기간이 짧다 교육환경 열악
	기 타	마케팅에 대한 교육 필요 전문교육 필요
공 통		농한기를 활용한 교육 교육의 사전 홍보 필요

수요자의 종합적인 평가는 견학·연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으나, 기술교육, 생산자교육에서는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농업인 민간위탁교육·훈련사업의 문제점

농업인 교육수료자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이 충실치 못하여 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수료자의 호응도면에서 보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 참여를 대다수가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교육에 대한 수요 전망은 밝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농업인이 더욱 전문화되고 현장 중심의 교육을 희망하고 있는 데 비하여 교육기관의 여건은 이러한 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교육기관의 실태를 보면, 교육기관간의 교육기반조건의 편차가 심한데, 교육 여건이 열악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의 자부담비율이 높은 전문교육에서는 교육시설 및 교육내용의 부실을 이유로 교육비 반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교육생을 확보하지 못하여 배정된 정부의 교육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다. 2002년도 교육기관 중 환경단체 교육기관의 경우 11개 기관이 배정된 예산을 일부 반납하여 교육비를 재배정 하였으나, 결국 최종 정산 시 교육비를 일부 반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교육시설이 일정 수준 정비된 교육기관의 경우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인증을 통하여 교육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육기관 차원에서 세계 등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하고 있다.

교육추진체계 면에서는 교육계획에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교육홍보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필요하며,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협, 품질관리원등 농업인을 광범위하게 접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술교육의 경우 현지도교육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지역 관련 기관·단체의 시설지원 등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술교육 시 실습장, 강사 등 분야별 교육자원에 대한 정보 체계의 확보 및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교육 방법 면에서는 첫째, 농가 여건에 맞는 현장지도교육과 분야별 컨설팅 지도가 필요하며, 교

육생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사후관리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체계를 갖춘 교육기관 또는 프로그램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둘째, 교육 수요자의 편의성 고려,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지교육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특히 여성농업인 교육 및 소비자 교육에서 이러한 의견이 많다. 그러나 집체식 강의 중심의 교육으로 교육생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나, 이에 대응한 현장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다. 또, 컴퓨터 보급이 확대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교육도 유효한 교육방법으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개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유형별로는 기술교육에서는 현장실습 및 사례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개괄적인 교육보다는 전문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도 좀 더 세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의 대부분이 일회성 이론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농업의 경우는 소비자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고, 과목별로는 이론교육보다는 사례발표 및 현장실습교육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 여성농업인 교육의 경우는 기본교육과 아울러 전문화를 위한 기술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해외연수교육에서는 대상자 선정, 사전준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 5 장

EU의 농업인교육 · 훈련사례와 시사점

1. EU 농업인 교육 · 훈련사업의 개관

1.1. EU 농업 교육 · 훈련사업 추진주체

EU의 농업인 교육 · 훈련사업의 추진 주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정부가 농민의 교육, 경영 지원에 직접관여, 스스로 농업교육 조직을 보유하고, 사업운영에 관한 재정도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로서 프랑스가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② 지방정부가 교육 · 훈련사업의 주체가 되고 정부는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서 독일, 스위스가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③ 농업단체, 농민조직이 몇 개의 형태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원조를 얻어 실시하는 형태로서 민간위탁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독일,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를 사례로 들 수 있다.

1.2. 교육 · 훈련 사업의 동향

EU의 농업인 교육 · 훈련사업의 특징은 교육 · 훈련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직접 지원에서 재정문제, 농업구조변화, 농업에 대한 수요와 기능의 개선 등의 문제로 사업이 민간 또는 단체로 이관되면서 간접 지원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지도 서비스가 유료화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서 영국, 네덜란드를 들 수 있다. 원래 유럽의 교육 · 훈련 사업은 독점이 아닌 농업기관, 농업단체, 농업사업체, 민간 컨설

팅회사 등 경합의 관계인 각종 교육·훈련 사업이 개별적으로 활동해 왔으나 최근 공적 지도사업이 후퇴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민간 컨설턴트가 적극 훈련 및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임으로써 각 계통의 단체 간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적 규모가 영세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적극 지원해 오던 영농교육사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전업농가의 창출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또, 교육·훈련 사업의 방향도 기존의 생산 및 전업농 육성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환경보전, 농촌 경관의 유지, 동물 복지 등에까지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 EU 제국의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의 실태

2.1. 덴마크

2.1.1. 민간 주도로 추진되어 온 교육·훈련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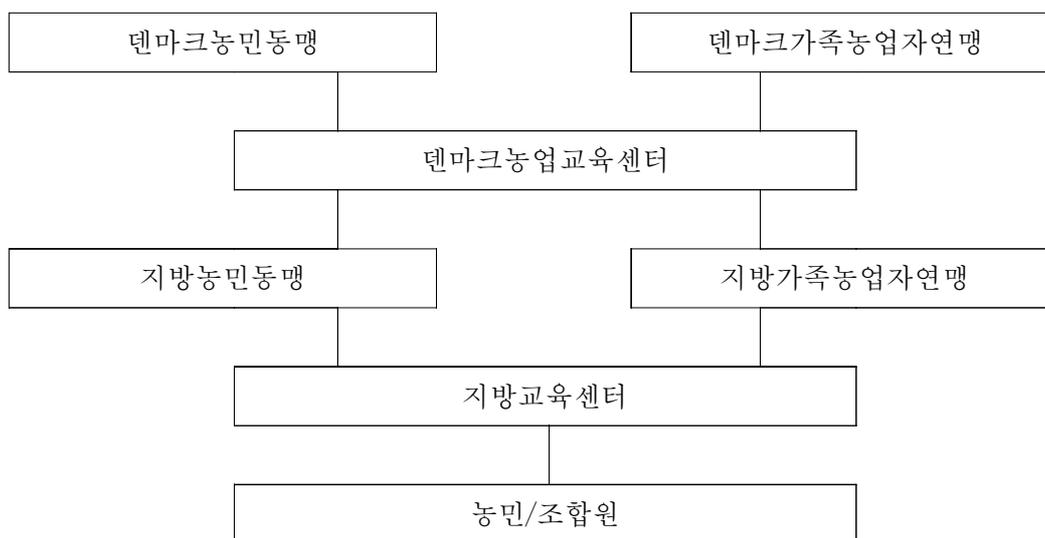
덴마크 농업은 농민조합, 협동조합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농가는 전적으로 이들 조합을 바탕으로 모든 농산물 증산을 꾀하고 수출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조합, 협동조합 사업도 자연스럽게 활발해지고 이들 기관의 중요한 사업활동이 기술 개발 및 교육·훈련으로 연결되고 있다.

각각의 조합형태에 따라 연구개발 기획이 수립되고 이를 교육원 및 농업전문잡지를 통해서 신기술정보가 농가에 전달된다. 유럽의 다른 국가와 달리 덴마크의 경우는 실시단계에서부터 민간 주도의 독특한 농민교육사업이 성립되어 있다.

2.1.2. 교육·훈련사업의 조직과 특징

교육·훈련사업은 크게 덴마크농민동맹(Danish Farmers' Union)과 덴마크가족농업자연맹(Danish' Family Farmers' Association) 두 개의 농민조직에 의해

그림 5-1. 덴마크 교육·훈련사업의 조직체계



운영되고 있다. 양 조직은 긴밀한 제휴관계를 가지고 사업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 교육센터를 두고 있다.

정부 차원의 교육지원은 이러한 농업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방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센터가 중심이 되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을 통해서 교육·훈련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사업 담당 자체는 업무적·경제적인 독립성을 보장 받고 있다. 교육·훈련사업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고 지도원의 활동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는다. 농업성의 담당관계자도 1~2명만 있으며 그것도 행정 및 재정만을 담당하고 있다.

2.1.3. 농업교육센터의 핵심인 농업정보연구소의 기능

덴마크 농업교육센터는 지도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속된 농업정보연구소는 센터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기관, 지도조직, 교육시설과 협력하여 농업정보, 직업교육,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① 농민의 기초교육: 농민에 대한 기초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방법 개발, 교육기자재의 생산지원, ② 농민의 평생교육: 농민의 평생교육의 계획, 조정, 교육방법, 교육기자재의 개발 지원, ③ 출판 및 교육기재의 제작: 지방지도센터,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팸플렛, 서적, 필름, 비디오, 슬라이드 제작, ④ 농업교육원에 대한 지속적 교육 실시 등이다.

덴마크 농업 교육·훈련사업의 주요 내용은 ① 농가에 대해 최신 생산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제공, ② 농장의 경영계획 및 기술응용에 관해 농가에 직접적인 컨설팅 제공, ③ 개별 경영체의 기술·경영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록·분석, ④ 청년농업인에 대한 평생직업교육 과정 개설 및 교육, ⑤ 시험 연구기관과 개별 농가의 지속적인 협조 체제 구축, ⑥ 농업 이외의 회계, 세무실무, 경영에 관한 컨설팅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1.4. 농업인 교육의 특징

덴마크 농업교육활동의 기본적인 이념은 농민의 자주적인 노력을 보완하는 것으로, 교육은 전적으로 농가의 의지에 달려 있어 의사결정주체도 농가가 되며, 결과에 대한 책임도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별 단위 농가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교육을 하고 있으나 점차 그룹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집회, 연수코스, 농업잡지, 조합원보 등의 수단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1.5. 농업인 재교육 체계

덴마크는 대표적 농업선진국으로 농업인 재교육에 있어서도 실습과 이론을 겸비한 포괄적 농업교육은 1세기가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직업농민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30개월 이상의 실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중 최소한 6개월은 축산농가에서, 다음 6개월은 작물재배농가에서 실습하고, 나머지 기간은 그 밖의 농업 분야에서 실습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덴마크 농민의 대다수가 해외견학과 해외 실무 경험을 쌓고 농민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주선하는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직업농민으로서의 전문을 넓히고 있다.

농민들은 새로운 지식이 요구될 때마다 일정한 기간 전문가로부터 재교육을 받는다. 전국의 28개 농업학교 중 3개 학교에서는 현직농민들의 재교육만을 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속적인 농민 재교육은 농민 교육위원회와 농업학교의 협력하에 이루어지며 연간 평균 6천명의 현직농민들이 3~6일 간에 걸친 재교육을 받고 있다.

2.1.6. 농업경영인 자격제도

덴마크는 그린카드(농업 경영인 및 지도자 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30ha 이상의 농지를 매입하거나 영농자금을 대출 받거나 선도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후원금을 지원 받기 위해 반드시 그린카드가 필요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거름 및 약제 살포 면허증을 취득한 농민만이 자신의 농지와 타 농가의 농지에 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2. 네덜란드

2.2.1. 농업인 재교육 훈련 개요

네덜란드 농업인 재교육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최신식의 시간제 과정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약 60,000명의 성인들이 훈련과정 또는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산의 확대 대신에 시장에서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많은 기업가들 역시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농업 분야 내의 교과 영역에서 제공되는 직업훈련과정체제는 일반훈련과정, 도제 훈련과정, 시간제 중등농업교육 등으로 분류 된다.

네덜란드의 주요 농민 교육 사업 및 기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① DLV(Dienst Landbow Voorlichtung) : 민영화된 공적교육사업
- ② SEV(Social Economische Voorlichtung) : 농민조직의 사회경제교육사업
- ③ IKC(Information en Kennis Centrum) : 농업정보·지식센터(교육사업을 지원)

- ④ 원예농업재단 : 원예 분야의 교육·훈련
- ⑤ 자재판매회사, 농산물집하업자, 저장회사 : 민간 교육원을 통한 교육사업
- ⑥ 기타 민간 컨설턴트 회사 등

2.2.2. 농민 교육·훈련사업의 핵심인 DLV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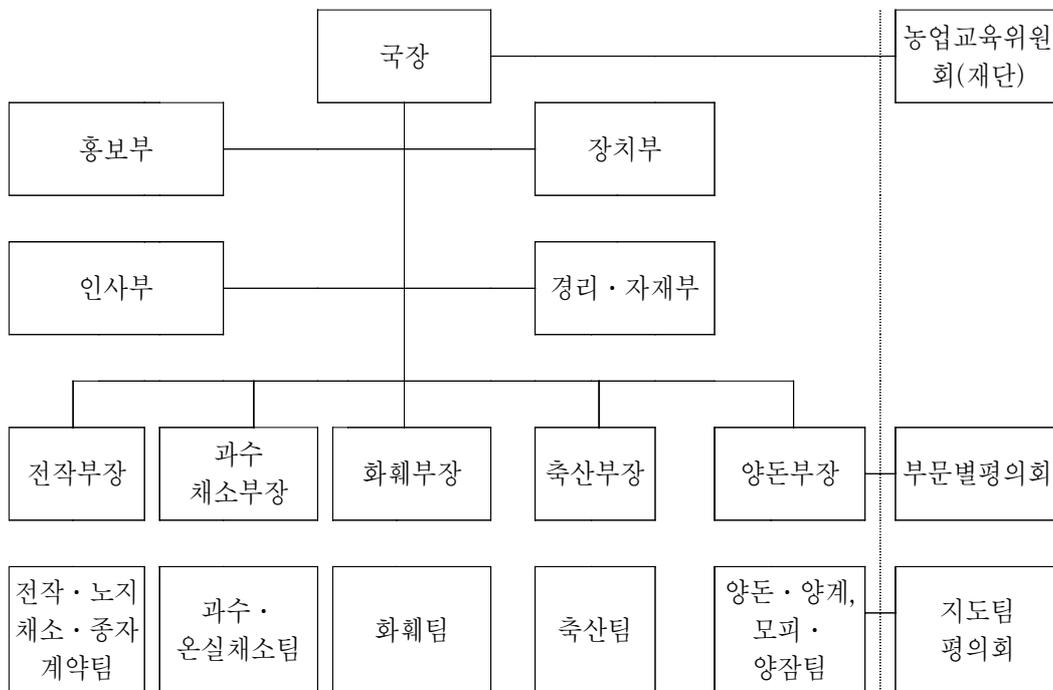
DLV는 네덜란드에서 농업교육 단체 중 가장 큰 조직으로 전국 26개 사무소에서 59개의 지역팀이 활동 중인데, 농민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문제에 관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신 농업정보의 제공과 함께 생산물의 품질, 안전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농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DLV에 대한 정부의 재정원조는 1991년 100%에서 매년 5%씩 줄어 2002년에는 50%에 이르고 있고 부족분은 대농민 서비스에 대한 요금징수와 조합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1992년부터 점차 정부조직에서 민간 조직으로 변모하여 교육원 역시 국가공무원에서 민간고용자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활동 분야는 생산, 기술, 경영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며 DLV는 각자의 업무 역할을 가지며 주요 업무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업경영자 뿐 아니라 농업노동자에게도 DLV의 서비스를 제공
- ② 활동영역은 농장경제, 작물 생산, 병해충방제, 토양비료, 농장건축, 농업기계화, 영양 등에 관한 장단기적인 문제 해결과 농업교육을 실시
- ③ 개별상담, 농가방문, 전화상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외에 그룹상담, 강의, 단기 연수코스 등도 실시
- ④ 농업수요에 따른 과학적, 실증적인 정보를 분류하여 제공하며 이를 위한 시험 연구 및 실증연구
- ⑤ 다양한 농가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

그림 5-2. DLV의 조직체계



2.2.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DLV의 훈련과정은 초보노동자, 숙련노동자 및 전문노동자와 같은 직업훈련 수준 별로 훈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인농업교육은 계약형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회사나 기관은 고등농업전문학교 또는 현장훈련센터에 대하여 계약에 기초한 다양한 훈련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있어 훈련과정은 특정 회사나 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기업가와 대리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STOAS(전문지원기관)의 “농업경영 및 훈련”이며, 이 프로그램에서 농업 기업가의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후기고등농업교육은 고등농업자교육 및 농업대학 졸업생을 위한 특별한 현직(훈련)과정도 제공하고 있다.

2.2.4. 고등농업교육 훈련과정과의 연계

기존의 농업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후에는 교육, 농촌지도, 연구 및 농업 관련 산업의 산합협동을 포함한 성인(고등) 종합 교육과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지역교육 청과의 연계를 통해 네덜란드 전역에서 제공되는 교육을 지역노동시장으로 이전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성인농업교육은 사전에 농업교육이나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부분의 경우 훈련과정 참여자들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2.3. 영국

2.3.1. 영국 교육·훈련사업의 변화

영국은 1946년 농어업식량성 내에 NAAS(National Agricultural Advisory Service)를 두어 최초로 공적인 교육·훈련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식량 증산이 주요한 목적으로 농지활용 및 농업관계단체간의 협력활동 등에 비중을 두었다.

이 후 1972년에 농어업식량성의 농지개발사업, 관개사업, 가축위생사업, 방역사업의 기능을 흡수하여 ADAS(Agricultural Development and Advisory Service, 농업개발·보급국)으로 재편되었다. 재편의 주된 이유는 재정상의 부담과 함께 교육·훈련사업, 시험 연구, 행정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었다.

ADAS 교육·훈련사업은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료화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정부 서비스의 축소 정책과 함께 점진적인 민간이양이 그 배경이 되었다.

2.3.2. 교육·훈련사업 유료화의 효과

교육서비스의 유료화 이후 지도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가 없어져 유료화에 따른 교육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교육담당 직원의 컨설팅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게 되었으며 매년 같은 컨설팅을 되풀이하는 교육원이 없어졌다. 농가 또한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 및 경영정

보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교육원의 교육활동 역시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지게 되어 결국 교육활동의 질적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유료화를 통한 민간 위탁 및 이양을 점차 늘려감으로써 ADAS 이외의 독자컨설턴트가 계속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ADAS와 민간 컨설턴트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보다 질 높은 기술정보 전달 및 대 농민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농업인의 선택영역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EU제국의 농업교육·훈련 시스템의 시사점

첫째, 영국, 네덜란드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설 이후 정부가 크게 관여하여 온 교육·훈련사업은 점차 민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과도적으로 반관반민적인 조직 운영에서 향후 10~20년 정도 사업 및 활동이 지속될 경우 완전한 민간조직으로서 컨설팅 및 대농민 교육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기존 민간교육사업(각종농업단체·조직, 농업자기재회사 등) 또는 민간 컨설턴트(개인, 회사의 컨설턴트, 세무·회계사무소) 등과의 경쟁, 경합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농가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매우 큰 과제가 될 것이다. 다만 농가에 서비스하는 교육·훈련사업이 민간·유료보급사업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교육사업의 영역은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지도·교육 사업에서 점차 공익에 관한 활동으로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므로 기존의 방식에서 발전적인 방식의 교육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도 과제로 남아 있다. 예를 들면, 환경보전, 자연보호, 농촌 경관유지 등을 포괄하는 교육활동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농업 관련 자격을 체계화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덴마크의 경우 농업 관련 자격 체계가 교육수준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직업적인 농민이 되기 위해 최소 30개월 이상의 실습기간을 거쳐야 한

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도 장기적으로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재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여하여 농업이 단순한 직업이 아닌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셋째, 농촌 실정에 맞는 교육·연수체제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각국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의 중심을 농업인력에게 두고 실질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대상에 있어서도 농업경영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경영주를 포함한 그의 배우자, 가족구성원, 임금노동자들까지 포괄하고 있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실습과 조별 구성을 통하여 교육생 각자의 의견과 현장경험을 교환하고, 공동의 해결사항을 토론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 간에 농업지식 및 정보의 원활한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기관이 대부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농업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업인이 직접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6 장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의 발전 방향과 개선방안

1. 농업인 민간위탁교육의 발전방향

1.1.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지식농업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 정보전달의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 수요자의 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도 증대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직접교육은 교육 환경의 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다양한 농업인의 교육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회 및 서비스 제공의 효율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민간교육 기능이 활성화하여 직업교육의 중심을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환경 등 농촌유지와 관련한 교양교육으로서 농업교육의 역할이 증대되고, 직업교육에서 제외되는 노령층등에 대한 사회교육기능의 수요가 확대되

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공공교육의 역할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1.2.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체제 정비

교육기관으로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교육기관을 중점 육성하고, 기타 교육기관은 교육장 차원에서 활용하는 등 교육기관의 정비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교육기반 및 조직을 확보하고, 사업 실적이 양호한 교육기관을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전문교육기관 육성을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기관 차원에서 제도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직업교육훈련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법”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증교육기관”을 양성토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부록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법”의 교육 관련 규정을 정리해 두었다.

1.3.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체제 구축

농업기술의 발전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농업 분야 전반에 걸친 농업 인력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원하는 교육훈련을 언제라도 제공할 수 있는 정보화 체계의 구축과 함께, 개별농업인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부의 농업인 위탁교육사업 개선방안

2.1. 교육추진체계

2.1.1. 교육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

농업인이 원하는 교육내용, 시기, 교육기관 등 교육정보를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농업인의 상당수가 아직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큼 시·군 자치단체 교육담당자가 네트워크의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교육의 네트워크화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교육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기술교육시 실습장, 강사 등 분야별 교육자원에 대한 정보 공유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1.2. 교육기관의 전문화·정예화

상당수의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조직이 미흡한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기관의 정예화가 필요하다.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육기관은 단체연합회가 교육관리를 주관하고 교육기관은 교육장으로 지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환경단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지양하고, 영세 환경단체는 단체연합회가 직접 교육기획 및 관리기능 등 교육관리를 담당하고 산하 영세한 환경단체는 교육장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2.2. 교육방법 및 내용

2.2.1. 분야별 전문교육 및 현지교육의 확대

교육생의 특성에 따라 단계별 심화교육이 필요하며, 전문교육단계에서는 분야별 전문화된 컨설팅식 지도가 필요하므로 각 기관의 교육 과정에 컨설팅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수요자의 편의성 고려,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지교육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여성농업인 교육 및 소비자 교육에서 이러한 의견이 많다.

2.2.2. 교육 수요에 대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능력에 대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교육 수요자의 대부분이 실기 및 현장실습을 겸한 입체적인 교육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교육 수요조사와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분야별 부문별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교육기관이 대부분 영세하여 이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품목교육, 환경교육, 여성교육, 청소년교육 등 교육유형별로 기초교재나 비디오 프로그램을 제작·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3. 교육비 지원

2.3.1. 교육비의 효율적 관리

교육실시가 농한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1/4분기에 교육 수요가 많으나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이 늦어 보조금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교육비 지원 방식도 교육프로그램별로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메뉴식 지원에서 프로그램 유형별로 지원 메뉴를 한정하되 사업계획에 입각하여 사업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2.3.2. 교육비의 수요자 부담 확대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 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에서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생의 부담을 의무화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4. 교육 평가

교육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정비와 함께, 지속적인 평가와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개선·보완하는 피드백(feed-back) 기능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1년 이후 3년 차 교육평가를 진행되고 있으나

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은 미흡한 실정이다. 농림부에서 교육비 차등 지원등 재제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나, 농민단체의 반발을 우려하여 미온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각 교육기관의 개선조치 노력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평가 결과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함께, 연초 사업계획 수립 시에 전년도 평가 결과에서 드러난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여부를 익년도 사업계획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록 1

직업교육·훈련제도 관련자료

1. 직업교육·훈련의 개념과 유형

가. 직업교육훈련의 개념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정의)

1. “직업교육훈련”이라 함은 산업교육진흥법 및 직업훈련기본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학생 및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훈련을 말한다.

나.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유형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직업과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모든 기관 또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범위는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9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실시기관 등)

- ②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교육진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기관
2. 교육법 제8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학
3.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4.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중 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교육훈련기관

산업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1. “산업교육”이라 함은 고등기술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개방대학 또는 대학이 학생에 대하여 농업·수산업·해운업·공업·상업 기타의 산업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11.

“직업훈련시설”이라 함은 직업훈련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직업훈련 교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직업훈련기관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하는 기관(공공 직업훈련기관), 개인 또는 단체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기관(인정 직업훈련기관),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관(사업내 직업훈련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공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로는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3개의 기관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직업전문학교 및 직업훈련원 등이 공공 직업훈련기관에 포함되고 있다.

2. 현장실습의 법적 근거

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시행령

1997년 3월 10일에 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동년 8월 9일에 제정된 법 시행령 중 현장실습 실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현장실습 이수 의무화

동법 제7조에서는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의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다.

①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이수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직업교육훈련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동법 제18조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촉진을 위해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법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상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군·자치구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 투자 계획의 수립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3. 직업교육훈련기관에 평가
4. 기타 당해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훈련

3)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절차의 내실화

동법 제8조에서는 현장실습 대상 산업체 선정 절차의 내실화를 위해 당해 지역의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협력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지역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 ② 현장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동법 제9조 1항에서는 현장실습생의 권리 강화를 추구하고 현장실습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5) 현장실습 이수 기간 규정

동법 시행령 제4조 1항에서는 직업교육훈련 계열별로 현장실습의 이수기간을 규정하였는데, 현장실습의 이수 기간은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6)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기준 제시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 법령에 의해 설립된 산업체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산업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
5. 기타 근로자의 인적 구성과 시설설비 및 후생복지 등이 현장실습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산업체

7)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절차와 내용 규정

- ① 직업교육훈련생과 산업체의 장은 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하는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 실시 7일전에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한다.
- ② 표준계약서에는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과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 및 의무, 현장실습 내용, 방법, 기간, 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현장실습산업체 장의 협조 사항 규정

1. 현장실습 계획의 수립과 이행
2.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장비, 자료의 확보
3.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4. 직업교육훈련 교원의 현장지도

9) 교원의 산업체 현장 지도

-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습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현장실습 소요 비용의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생, 직업교육훈련교원 또는 현장실습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11) 현장실습의 근무 경력 인정

-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경력을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산업교육진흥법

1) 산업교육협회의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 ①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협회가 이를 선정한다.

2) 상공회의소에 산업교육협회 설치

- ① 사업 교육과 산업 현장을 연계하고 산업교육을 위한 산업체의 참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에 산업교육협회를 둔다.

3) 산업체장의 협조 사항 규정

- ①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체의 장은 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이 현장실습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계획의 이행과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자료의 확보
2. 보건·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기숙사 등 후생복지시설의 제공
4.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4) 현장실습 이수학과 및 이수기간의 규정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보험 급여의 지급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재해보상 사유 발생으로 인정한다.
- ③ 현장실습생의 보험료 규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 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 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보험료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부록 2

농업인 교육·훈련 실태조사표

I. 기관운영 실태

1. 기관 운영개황

가. 귀 기관(단체)의 설립과정은 어떠합니까?

1) 설립연도 :

2) 설립목적 :

3) 연 혁 :

나. 귀 기관의 교육훈련 기본 방침은 어떠합니까?

다. 교육계획의 목표와 내용은 어떠합니까?

1) 목표 :

2) 내용 :

라. 기관의 교과 과정 운영조직은 어떠합니까?(기구 및 조직)

마. 2001년 당시 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훈련생 현황은 어떠합니까?

과정 명	교육생 수	훈련대상	훈련방법 ¹⁾	훈련기간	훈련시기

1) 합숙훈련, 견학, 실기실습등

바. 교육예산 및 지출 현황(2001년도)

구 분		금액 (천원)	내 역		
과정	수입		보조금:	기관부담:	교육생부담:
	지출		강사료:	교재비:	실습비:
	잔액		견학비:	기타:	
과정	수입		보조금:	기관부담:	교육생부담:
	지출		강사료:	교재비:	실습비:
	잔액		견학비:	기타:	
과정	수입		보조금:	기관부담:	교육생부담:
	지출		강사료:	교재비:	실습비:
	잔액		견학비:	기타:	
과정	수입		보조금:	기관부담:	교육생부담:
	지출		강사료:	교재비:	실습비:
	잔액		견학비:	기타:	

2. 교육훈련시설 및 교원 확보 현황

가. 교육훈련시설

시설명	면적(평)	용도	비고

나. 교원 확보현황

과정 명	전임교원(명)	시간강사(명)	비고

다. 시간강사의 활용 및 관리방법(강사 관리카드 활용 상황 등)

라. 외부 실습장 및 견학시설 활용 현황

과정 명	견학 및 실습장명	교육훈련내용	관리 및 섭외방식

3.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계획 대 실적

가. 훈련계획 수립과정 및 내용

나. 금년도 당초 훈련계획 대 실적

과정명	계획인원	훈련인원	비고

다. 분기별 훈련 실적

과정 명	분기별 훈련인원				계
	1/4	2/4	3/4	4/4	

4. 교육·훈련생의 선발 및 관리현황

가. 교육훈련 홍보 현황

나. 교육훈련생의 지원 및 선발현황

과정명	지원인원	선발인원	선발기준

다. 훈련생의 수업관리(출결 상황, 수료증등 등)

라. 사후관리(훈련생 카드관리, 사후지도 및 상담, 수료생모임등)

5. 교육성과의 평가 관리현황(정기 및 부정기 평가로 구분작성)

가. 평가시기 및 방법 :

나. 주요평가내용 :

다. 평가 주체 :

라. 평가의 활용 :

6. 향후 교육 수요 개발 및 교육개선에 대한 의견

II. 교육프로그램(과정) 실태 조사표 (프로그램 별로 작성)

프로그램(과정) 명 : _____

1.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가. 필요성

나. 목 적

2. 교육 · 훈련 개요

가. 교육 · 훈련 시기 및 기간 : 일부터, 일까지 (일간)

나. 교육인원계획 및 실적 : 계획 _____명, 실적 _____명

다. 교육 · 훈련과목의 구성

과목 명	강의시간 구성(%)			
	이론강의	실 기	현장·견학	토의·토론

라. 1인당 교육비 비용부담

단위: 천원

총교육비	국고보조	기관부담	교육생 부담

3. 교원 확보현황

가. 교원의 구성

과목 명	강사 인원(명)		특기사항
	전임교원	시간강사	

4. 교육·훈련생의 학습평가(자체 평가 결과 첨부)

가. 과정 이수율

○교육 대상자 수 :

○교육 이수자 수 :

나. 교육 호응도(구체적으로)

5. 교육·훈련 이수의 효과

가. 기능 성취면 :

나. 지식 성취면 :

다. 현장 적용면 :

6. 교육·훈련 이수자의 사후관리 체계

7. 교육이수자 현황(2001년):(과정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자료첨부)

- ① 만족 ② 보통 ③ 불만

3. 앞으로도 교육을 또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4. 교육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ABSTRACT**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the Current Farmers' Training Program**

A plan for entrusting the current government-led training program for farmers to the private sector has been recently proc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analyze the current operations of the farmers training programs in Korea, 2) to review the operations in other selected countries, 3) and to devise a plan for the improvement.

Researcher: Park Moon-Ho

E-mail address: mhpark@krei.re.kr

참 고 문 헌

- 강종훈 등. 1998.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 농림부. 2003. 『2003년 정보화선도자 육성계획』.
- 박문호 등. 2001. 2002.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준호 등. 1998.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인식. 2000. “농업인력 육성교육의 효율화 방안.” 『한국협동조합연구』 20(1).
- 안덕현 등. 2001.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 방안 연구』. 한국농업전문학교.
- 안충영. 2000. “지식기반 경제와 한국 농업의 진로.” 농업인의 날 국제학술대회 자료.
- 윤대범. 1999. 『지방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활성화 방안』.
- 이동필. 2000. “디지털 시대 한국 농업의 지식산업화를 위한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 농업인의 날 국제학술대회 자료.
- 이영대 등. 1993. 『농업계 교육체제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용환 등. 2000. 『21C 신지식농업인화 방안 및 교육훈련 연구』. 농림부.
- 정순관, 조선일. 2001. “지방 공공 서비스 민간위탁제도 운영의 효율성 평가.” 『한국행정논집』 13(4).
- 정지선 등. 1998. 『산업체 위탁교육의 개선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철영. 2002.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농업인력 양성.”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4(4).
- _____. 1999. “농업인력의 육성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1(3).
- 정철영, 이용환, 나승일. 2001. “국외의 농업인력 정책 분석 및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4(2).
- 정황근. 2002. “농업인력 육성제도 및 정책”. 농림부.
- 藤田康樹. 1995. 『21世紀への農業普及』. 農文協.
- 竹中久二雄 등. 1994. 『世界の農業支援システム』. 社団法人 農産漁村文化協會.

연구자료 D183

농업인 민간위탁 교육·훈련의 실태와 발전방안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3. 12.

발 행 2003. 12.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E-mail : DONGYP@Chollian.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